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랑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제3조)

다. 보조금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제7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7조)

본 조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썸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